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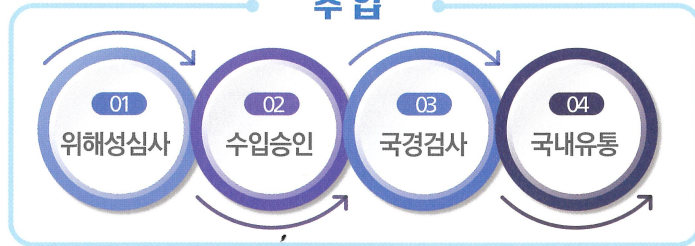
LMO(유전자변형생물체)

Living Modified Organism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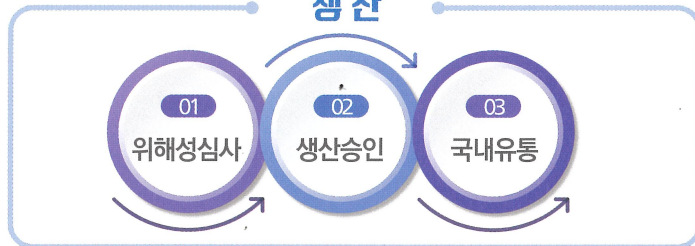
인위적으로 유전자를 변형하여 만든 식물 또는 종자를 말하며, **콩·옥수수·유채·목화·밀·아마·알팔파** 등이 주요 대상작물입니다.

LMO 안전관리 절차

수입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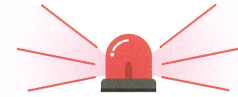
생산



LMO는 위해성심사와 더불어 용도별로 엄격하게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.

수입생산·승인 관계기관

- 국립종자원** ▶ 종자유
-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** ▶ 사료용 농업가공용
- 농촌진흥청** ▶ 축산산업용 미생물
- 농림축산검역본부** ▶ 동물의학품용
- 식품의약품안전처** ▶ 식품·의료용



유전자변형작물의 종자 유통 및 재배 금지!!!

[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법률]에 의해 국내에서 LMO 종자 유통 및 재배는 금지되어 있습니다.

**LMO 발견시 폐기해야 하며,
행정처분·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**

*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제41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



행정처분, 형사처벌



발견즉시 폐기

파종 전 LMO 무상검사 신청하세요!



국립종자원에서는 유채·목화·콩·주키니호박을 자가채종하는 농가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**LMO무상검사**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

- 종자를 구입하거나 판매하려는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니며, 구입처에 확인 또는 자체적으로 검사·관리하여야 합니다.
- 유채·목화·콩·주키니호박 종자 판매업체 및 재배농가는 유통·재배 전에 반드시 유전자변형 작물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